##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세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2452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:이세열 의원(1명) 찬 성 자 :권영희, 김경영, 김제리,

>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8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서울창의상의 목적에 부합하고,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·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, 공무 원(자치구 포함)으로 규정(안 제2조제1호).
- 나. 수상부문을 창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고 연 1회 시상(안 제3조).

- 다.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(안 제5조).
  - 1)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
  - 2)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내용 추가
  - 3)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 명시
  - 4)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(의원, 장기치료, 비밀누설의 경우) 관련 조항 신설
- 라. 서울창의상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'공무원 제안 규정'상의 심사기준 반영(안 제10조).
- 마.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(안 별표).
  - 포상금 지급 기준액: 최우수(300만원), 우수(200만원), 장려 (100만원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 관 직원(이하 "공무원 등"이라 한다)"를 "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(이 하 '공무워'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-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하며,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.
  - 1. 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·공무원
  - 2. 제안실행부문: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
  - 3. 혁신시책부문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

제4조제1항 중 "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는"을 "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서울창의상 및

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"을 "서울창의상 수상자를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"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"를 "서울창의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"를 "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 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"로 하며,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  - 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창의성
- 2. 실현가능성
- 3. 효율성 및 효과성
- 4. 적용범위
- 5. 계속성

제12조 중 "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 다만,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."를 "제3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"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[별표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 표]

## 서울 창의상 포상금(제13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천원)

수상대상	<b>u</b> 0	포 상 금						
	부 문	최우수	우 수	장 려				
시 민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		
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		
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				
	혁신시책	3,000	2,000	1,000				

<sup>※</sup>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

# 혅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,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 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·단체. 서울 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 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 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 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행

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 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정

안

개
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

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
1. "제안"이라 시민·단체(이하 "시민" 이라 한다). 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. 출연기관 직원(이하 "공무원 등" 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 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.

1. "제안"이란 시민·단체(이하 "시민" 이라 한다). 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) 제3조(서울창의상 시상부문 및 수여대 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.

상)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 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하 며,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.

- 1. 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 정발전에 기여한 시민·공무원
- 2. 제안실행부문: 채택제안의 적극적 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

<b>41</b> 41	7H TI OI
현 행	개 정 안
	3. 혁신시책부문: 사회문제 해결을 위
	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
	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
②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	<u>&lt;삭 제&gt;</u>
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	
<u>같다.</u>	
1. 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	
정발전에 기여한 시민(연2회)	
2. 예산절감부문: 창의적 제안 및 예	
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	
<u>감·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(연1회)</u>	
3. 지식경영부문: 시정연구 논문 성과	
가 우수한 시민(연1회)	
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	<u>  &lt;삭 제&gt;</u>
<u>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</u>	
호와 같다.	
1. 창의제안부문 : 창의적 제안으로	<u> &lt;삭 제&gt;</u>
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(연2회)	در ا
2. 제안실행부문 : 채택제안의 적극적	<u> &lt;삭 제&gt;</u>
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	
<u>공무원 등(연2회)</u>	
3. 혁신시책부문 : 사회문제 해결을	<u>&lt;삭 제&gt;</u>
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	
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	
<u>(연2회)</u>	
4. 상생협력부문 : 업무분야에서 상호	<삭 제>
 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	
 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	
데 기여한 공무원 등(연2회)	
5. 예산절감부문 : 창의적 업무수행으	<u>&lt;</u> 삭 제>
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	

현 행	개 정 안
한 시의 공무원(연1회)	
6. 지식경영부문 : 학습동아리·시정연구	<u>&lt;</u> 삭 제>
논문(연1회), 공무원직접수행 학술	
용역(연1회)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	
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	<u> &lt;삭 제&gt;</u>
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	
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	
할 수 있고, 시상주기는 연1회로	
<u>한다.</u>	
⑤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	②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
분야,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.	분야,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.
제4조(수상자 선정) ① <u>서울창의상의</u>	제4조(수상자 선정) ① <u>서울창의상의</u>
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	<u>부문별 수상자는</u> 제5조에 따른 서울
<u>자는</u>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	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	정한다.
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	② 서울창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
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	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
 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	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
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	니할 수 있다.
다.	
제5조(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) ① (생	제5조(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	1. 서울창의상 선정에 관한 사항
정에 관한 사항	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<u>에 대하</u>	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

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

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

현 행	개 정 안
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	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
이 되도록 한다.	<u>당연직 위원이 되고,</u> 제2호의 민간
	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	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
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	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
	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
	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
	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
	를 대행한다.
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	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
<u>할 수 있다.</u>	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
	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
	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
	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
	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
<신 설>	<u>기간으로 한다.</u>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
<u> </u>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
	속을 해제할 수 있다.
	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	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
	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	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
	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	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
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	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
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	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어 창의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계속	<u>1. 창의성</u>

현 행	개 정 안
성, 적용범위, 경제성, 협력성 등을	<u>2</u> . 실현가능성
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	<u>3. 효율성 및 효과성</u>
	4. 적용범위
	<u>5. 계속성</u>
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	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
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<u>제3조</u>	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<u>제3조</u>
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	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
다. 다만,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	
하지 아니한다	
제15조(관리) ① (생 략)	제1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「국민제안규정」제9조의2에 따라	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
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	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
한 제안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	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
	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
	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
	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
	여야 한다.
[별표]서울창의상 포상금(제13조 제2항 관련)	[별표]서울창의상 포상금(제13조 제2항 관련)
(다의 : 처워)	(다의 : 처워)

(단위 : 천원)

수상대상	부문별	포 상 금					
Тача	<b>十七</b> 章	최우수	우 수	장 려			
	창의제안	5,000	3,000	2,000			
ון דו	<u>지식경영</u> (시정연구논문)	5,000 3,000 2,000					
시 민	<u>서울창의</u> <u>대 상</u>	10,000					
	예산절감	<u>서울특별</u> 운영규칙					
<u>시·자치구</u> 공무원	창의제안	3,000 2,000		1,000			
<u>투자·출연기관</u> <u>직원</u>	제안실행	3,000	1,000				

(단위 : 천원)

수상대상	부문별	포 상 금					
T6416	十正宣	최우수	우 수	장 려			
	창의제안	<u>3,000</u>	2,000	1,000			
n) m)	<u>&lt;삭제&gt;</u>						
시 민	<삭제>		_				
	<삭제>		-				
시·자치구	창의제안	3,000 2,000		1,000			
<u>공무원</u>	제안실행	3,000	1,000				

현 행						개	정	안					
	혁신시책		5,000	3,000	2,000			į	혁신서	]책	3,000	2,000	1,000
	<u> </u>		5,000	3,000	2,000			<u>&lt;삭제&gt;</u>		_	_	-	
		<u>학 습</u> 동아리	3,000	2,000	1,000				<	삭제>	_	_	_
	<u> </u>	<u>시정연구</u> <u>논문</u>						<u>&lt;삭</u> 제>	<	삭제>			
3		<u>공무원직접</u> <u>수행학술</u> <u>용역</u>	3,000	2,000	1,000				<	삭제>	_	_	_
	<u>서울창의</u> <u>대 상</u>			10,000				-	<삭제	>		_	
시 공무원	-	예산절감 <u></u>	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			<u>&lt;삭제&gt;</u>	<삭제>		<u>&lt;</u> 삭제>				

<u>\*\* 제2조 2호의 "채택제안"의 경우 200,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.</u> <삭제>

※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 ※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